

서울고등법원 2020. 5. 14 선고 2019나2050480(본소), 2019나2050497(반소) 판결 [구상금
청구의 소 손해배상(자)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0. 5. 14 선고 2019나2050480(본소), 2019나2050497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3 선고 2017가합33600(본소)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피, 항소인

A 단체

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

피고(반소원고)항, 소인

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오

담당변호사 이광복

변론 종결 2020. 3. 12

판결 선고 2020. 5. 14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7가합33600(본소), 2018

가합506839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가.청구취지

피고(반소원고,이하 '피고'라 한다)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, C은 공동하여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275,888,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4. 29.부터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114,286,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. 4. 26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 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제1심 판결 이유 중 "피고 주식회사 B, 피고"를 "제1심

공동피고 주식회사'로, "피고 C"을 "제1심 공동피고 C"으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는, 제1심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카렌스차량에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36,473,618원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망인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을 인정하여 감액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.)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설범식판사 김길량판사 김용민